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개정(안)

□ 개정(안) 주요 내용

번호	편람 쪽수(기존)	주요내용
0	전체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인용 조문 번호 수정, 대기법과 내용 통일, 후단 부록 최신화
1	p17(p17)	대기관리권역법, 환경오염시설법, 공정시험기준 용어 정의 신설
2	p18(p18)	비정상자료 용어 정의 신설
3	p19(p19)	통합관리사업장 용어 정의 신설 및 정상마감자료 용어 정의 수정
4	p27(p27)	관할 행정기관의 신뢰성 시험 요청 시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종료일 명시 의무화 및 사업장관리카드 관리 강화
5	p28(p28)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부착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업무처리 절차 신설
6	p48(p46)	편람의 원격검색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고시와 통일
7	p52(p48)	통합관리사업장 유량가중평균 수치맞춤 정의 추가 및 정도검사 수검기간 대체자료 용어 수정
8	p54(p49)	자료가 미수신 될 경우 수동덤프명령이 가능하다면 미수신 대체자료 미입력 정의 신설
9	p58(p53)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시 관제센터에 통보
10	p69(p63)	기술검토심의회 관련 용어 환경부고시와 통일
11	p78(p72)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인해 측정점 수 내용 수정
12	p90(p84)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무선망 내용 추가
13	p122(p105)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개선계획(자체개선)에 대한 개선기간 권고 일수 추가
14	p131(p119)	통합관리사업장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최대배출기준 활용 내용 추가
15	p132(p120)	확정배출량 수치맞춤 및 질소산화물 내용 추가
16	p137(p124)	부과금 산정시 필요한 지역별 부과계수 등에 대한 행정 절차 수정
17	p138(p125)	부과금 산정 절차도 수정

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 新 · 舊 대조표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0. 공통			
전체	2) 신뢰성 시험의 구분 가) 통합시험 사업장의 자료수집기 또는 중간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912.1(부록 4 굴뚝자동감시체계의 구성) 및 ES 01901.2(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디지털통신방식), ES 01914.1(부록 5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기반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2) 신뢰성 시험의 구분 가) 통합시험 사업장의 자동측정기기 또는 자료수집기와 관제센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ES 01914.1(부록 3 굴뚝자동감시체계의 구성), ES 01901.2(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디지털통신방식)에서 규정한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 (예시) '21년 하반기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인해 조문 번호 수정
	1) 조치명령에 따른 개선계획 < 생 략 > 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각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행	1) 조치명령에 따른 개선계획 < 생 략 > 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각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	○ (예시) 대기법 시행령 제 21조의 조문과 문구 통일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I.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개요			
p17 (p17)	<p>「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2020)」(이하 “업무편람” 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p> <p>○ 법령 명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란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말한다.</p> <p>< 신 설 ></p> <p>< 신 설 ></p> <p>< 신 설 ></p> <p>○ “관제센터 운영규정” 이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p>	<p>‘굴뚝 원격감시체계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명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3) ‘환경오염시설법’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4) ‘공정시험기준’ 이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말하며,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5) ‘관제센터 운영 규정’ 이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최신 규정을 적용한다. 	<p>○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련 법령의 약칭 용어 정의</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18 (p18)	< 신 설 >	<p>20) '비정상자료'란 자동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30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p> <p>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p> <p>나) 순간 정전 직후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 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p> <p>다) 자동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하기 곤란한 경우</p> <p>라) 자동측정자료가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전산망의 이상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경우</p> <p>마) 기타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 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p>	○ 관제센터 운영규정(환경부 고시)에 명시된 비정상자료 용어 정의 추가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19 (p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마감자료”란 월간자료 전체를 대체자료로 생성하지 아니한 자료를 말한다. < 생 략 >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 ‘정상마감자료’란 1개월간 축적된 30분 평균치가 모두 비정상자료가 아닌 자료를 말한다. < 생 략 > 26) ‘통합관리사업장’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센터 운영규정(환경부 고시)에 명시된 정상마감자료 정의와 일치 ○ 환경오염시설법에 의해 통합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II.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관리			
p27 (p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 생 략 > 나) 측정기기 신규부착 시 업무 세부절차 < 생 략 > (3) 사업자로부터 부착완료 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 생 략 >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기기 신규 부착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생 략 > (3) 사업자로부터 부착완료 신고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관리권역의 전국 확대로 인해 측정기기 부착 관련 법령이 추가되어 업무절차 세분화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부착완료 신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을 정하여 즉시 해당 사업장, 관제센터 및 지도점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4)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카드와 함께 대상 배출시설의 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 등을 관제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신뢰성시험(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등)을 요청한다.</p> <p>< 신 설 ></p>	<p>부착완료 신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을 정하여 즉시 해당 사업장, 관제센터 및 지도점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 관할 행정기관은 관제센터에 신뢰성시험 요청 시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의 종료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p> <p>(4)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장관리카드와 함께 대상 배출시설의 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 등을 관제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신뢰성시험(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등)을 요청한다.</p> <p>- 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 및 측정기기 교체 등 사업장관리카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여 굴뚝 전산망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행정기관별 신뢰성 시험 요청에 대한 내용이 일부 상이하여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종료일 명시 의무화</p> <p>○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기기의 제원을 확인하는 사업장관리카드의 변경 작성 의무화</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28 (p28)	<p>< 신 설 ></p>	<p>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신규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관련 업무처리 절차</p> <p>(1) 관할 행정기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시(신고, 변경 등을 포함)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한다.</p> <p>(2)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일 까지 자동측정시스템을 부착하고 행정기관에 신규 부착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 총량관리사업자는 가상사설망 단말기의 설치를 관할 관제센터로 신청하고, 행정자료 활용 유효기간 이내에 정도검사 및 통합·정도확인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p> <p>(3)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부착완료 신고를 접수받은 행정기관은 부착완료 신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행정자료 활용유효기간을 정하여 즉시 해당 총량관리사업장, 관제센터 및 지도·점검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p> <p>(4) 행정기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대상 배출시설의 측정항목, 배출 허용기준을 관제센터에 통보하고, 해당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신뢰성 시험(통합시험</p>	<p>○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업무처리 절차 추가</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및 정도확인시험 등)을 요청한다.</p> <p>(5) 총량관리사업자는 신뢰성 시험 수검 전에 굴뚝 전산망에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필증) 사본 -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검토 결과서 (통합허가 검토결과서) 사본 -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업장관리카드 및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정도검사 기록부 및 점검표 사본(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제출, 신뢰성 시험 후 제출 가능) - 온도계 교정성적서 및 표준가스 성적서 사본 등 <p>(6) 관제센터는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신뢰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7) 행정기관은 관제센터에서 통보 받은 내용을 사업장에 통보하며, 부적합한 굴뚝자동측정시스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사업자로</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하여금 부적합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뢰성 시험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조치명령 등) 취하여야 한다.</p> <p>라)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기존 배출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관련 업무처리 절차</p> <p>(1)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p> <p>(가) 행정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또는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써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되어 새로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행정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 총량관리사업자는 가상시설망 단말기의 설치를 관할 관제센터로 신청하고, 행정자료 활용유예기간 이내에 정도검사 및 통합·정도확인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p> <p>(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해당하는 배출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착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일련의 연속공정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p>(다) 이후의 절차는 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신규 배출시설의 업무처리 절차와 동일하다.</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2) 부착 제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p> <p>(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의 부착 제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제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행정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 해당 제외 사유가 소멸된 날이란 배출량이 확정된 날(이의신청 기간포함)을 말함</p> <p>(나) 가상사설망 단말기의 설치를 관할 관제센터로 신청하여야 한다.</p> <p>(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체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착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p> <p>-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p>	

쪽수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일련의 연속공정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p>(라) 이후의 절차는 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신규 배출시설의 업무처리 절차와 동일하다.</p> <p>(3) 대기배출시설 변경 시</p> <p>(가) 행정기관은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부착시기를 명시하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하고, 해당 총량관리사업장은 명시된 기간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행정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쪽수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나) 가상시설망 단말기의 설치를 관할 관제 센터로 신청하여야 한다.</p> <p>(다) 이후 절차는 1)의 신규 배출시설의 절차와 동일하다.</p>	
p48 (p46)	<p>다. 굴뚝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신뢰성 시험</p> <p>< 생 략 ></p> <p>5) 원격검색</p> <p>< 생 략 ></p> <p>바)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p> <p>< 신 설 ></p>	<p>다. 굴뚝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신뢰성 시험</p> <p>< 생 략 ></p> <p>5) 원격검색</p> <p>< 생 략 ></p> <p>바)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p> <p>(1)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펠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p>	<p>○ 관제센터 운영규정(환경부 고시)와 동일하게 원격검색 업무정의 추가</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52 (p48)	<p>나. 측정자료의 수치 맺음</p> <p>< 생 략 ></p> <p>2) 수치 맺음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 사례</p> <p>< 생 략 ></p> <p>< 신 설 ></p> <p>다. 무효자료 선별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p> <p>1) 무효자료의 범위</p> <p>< 생 략 ></p> <p>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기간에 측정하였거나 정도 검사 유효기간을 넘긴 기간 중에 측정한 자료</p>	<p>나. 측정자료의 수치 맺음</p> <p>< 생 략 ></p> <p>2) 수치 맺음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 사례</p> <p>< 생 략 ></p> <p>3)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유량가중평균 계산 시 한국산업규격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제1부: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의 수치맺음을 따른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가. 유량가중평균의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204828223 → 7.20, 7.139677263 → 7.14)</p> <p>나. 유량가중평균과 최대배출기준의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60.04023519% → 60%, 59.49731053% → 59%)</p> </div> <p>다. 무효자료 선별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p> <p>1) 무효자료의 범위</p> <p>< 생 략 ></p> <p>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수검기간 및 정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수검을 받지 아니한 측정자료</p>	<p>○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 배출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유량가중평균 수치맺음 정의</p> <p>○ 관제센터 운영규정(환경부 고시)와 용어 통일</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 정도검사 유효성이 부적합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사유발생 해제일까지 자료를 무효화 한다.</p> <p>< 신 설 ></p>	<p>(1) 정도검사 수검기간의 무효자료 처리기간은 정도검사 시작일로부터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p> <p>- 유량계의 경우 정도검사 수검 시 탈거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정도검사 완료일은 글썽 부착일로 한다.</p> <p>(2) 정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의 무효자료 처리기간은 불합격된 정도검사 시작일로부터 차후 합격한 날까지 이거나 교체·개선 등으로 정상가동이 확인된 날까지로 한다.</p> <p>(3) 정도검사 유효기간을 지난 경우의 무효자료 처리기간은 정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차후 수검하여 합격한 날까지로 한다.</p>	<p>○ 정도검사 무효자료의 설명이 모호하여 관제센터 운영규정(환경부고시)와 동일하게 문구를 조정하고 유량계의 경우 추가</p>

쪽수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54 (p49)	<p>다. 무효자료 선별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p> <p>1) 무효자료의 범위</p> <p>< 생 략 ></p> <p>< 신 설 ></p>	<p>다. 무효자료 선별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p> <p>1) 무효자료의 범위</p> <p>< 생 략 ></p> <p>하) 자동측정기기 및 자료수집기 등으로부터 자료가 미수신 된 경우 측정자료</p> <p>(1) 단기간의 미수신으로 추후 자료수동전송 명령을 통해 자료수집기에 저장되어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p> <p>(2) 중간자료수집기의 이상으로 미수신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p>	<p>○ 단기간의 미수신이나 중간자료수집기 이상인 경우는 무효자료 미해당</p>
p58 (p53)	<p>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 업무 처리</p> <p>1) 업무처리 절차도</p> <p>< 생 략 ></p> <p>2) 기관별 역할 및 세부절차</p> <p>< 생 략 ></p> <p>나) 행정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사업장에 대한 확인 및 지도·점검 - 사업자로부터 행정처분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요청 	<p>라. 배출허용기준 초과 관련 업무 처리</p> <p>1) 업무처리 절차도</p> <p>< 생 략 ></p> <p>2) 기관별 역할 및 세부절차</p> <p>< 생 략 ></p> <p>나) 행정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과사업장에 대한 확인 및 지도·점검 (2) 사업자로부터 행정처분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 심의요청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량 산정에 대한 사업장 이의 접수 및 관제센터 통보 - 과징금 납부통지 및 산정내역 작성·통보 (사유발생 60일 이내) - 개선계획(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개선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개선기간 등의 관련 자료를 관제센터에 통보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관제센터에 대한 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배출량 산정에 대한 사업장 이의 접수 및 관제센터 통보 (4) 부과금 납부통지 및 산정내역 작성·통보 (기준일부터 60일 이내) (5) 조치명령, 개선명령 및 자체개선에 의한 개선기간 등의 관련 자료를 관제센터에 통보 (6) 행정처분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관제센터에 통보 (7) 기타 관제센터에 대한 업무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이력을 굴뚝 전산망에 일괄 관리하고자 통보 의무 명시
p69 (p63)	<p>가. 기술검토심의회 설치 및 구성</p> <p>< 생 략 ></p> <p>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정상자료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기술검토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p>	<p>가. 기술검토심의회 설치 및 구성</p> <p>< 생 략 ></p> <p>2)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아래의 각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기술검토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가) 굴뚝 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문</p> <p>나) 관제센터에서 확인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이견을 제시한 자료의 심의</p> <p>다) 비정상자료에 대한 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제센터 운영규정(환경부 고시)과 기술검토심의회 운영 문구 통일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Ⅲ.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			
p78 (p72)	<p>다. 측정기기 설치환경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p> <p>1) 측정위치(시료채취지점을 포함한다)의 선정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 생 략 ></p> <p>2) 측정점(대표점)의 선정시 굴뚝단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p> <p>가) 굴뚝단면이 원형일 경우</p> <p>< 생 략 ></p> <p>(2) 측정공이 수직굴뚝에 위치할 경우에는 굴뚝 단면의 1/4에 해당하는 반경선상의 측정점으로 줄일 수 있다. 측정공이 수평굴뚝에 위치할 때에는 모든 측정점에서 측정을 한다.</p> <p>나) 굴뚝단면이 사각형일 경우</p> <p>< 생 략 ></p> <p>(3) 측정 단면에서 유속의 분포가 비교적 대칭을 이룰 경우에 수평굴뚝은 수직대칭축에 대하여 반측면만을 취하고, 수직굴뚝은 1/4의 단면을 취하며, 측정점의 수를 각각 1/2, 1/4로 줄일 수 있다. 측정공이 수평굴뚝에 위치할 때는 모든 측정점에서 측정을 한다.</p>	<p>다. 측정기기 설치환경과 관련된 주요 고려사항</p> <p>1) 측정위치(시료채취지점을 포함한다)의 선정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 생 략 ></p> <p>2) 측정점(대표점)의 선정시 굴뚝단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p> <p>가) 굴뚝단면이 원형일 경우</p> <p>< 생 략 ></p> <p>(2) 측정 단면에서 유속의 분포가 비교적 대칭을 이루는 경우 수평굴뚝은 수직대칭축에 대하여 1/2의 단면을 취하고 측정점의 수를 1/2로 줄일 수 있으며, 수직 굴뚝은 1/4의 단면을 취하고 측정점의 수를 1/4로 줄일 수 있다.</p> <p>나) 굴뚝단면이 사각형일 경우</p> <p>< 생 략 ></p> <p>(3) 측정 단면에서 유속의 분포가 비교적 대칭을 이루는 경우 수평굴뚝은 수직대칭축에 대하여 1/2의 단면을 취하고 측정점의 수를 1/2로 줄일 수 있으며, 수직굴뚝은 1/4의 단면을 취하고 측정점의 수를 1/4로 줄일 수 있다.</p>	<p>○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인해 원형굴뚝의 측정점 수 개정</p> <p>○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인해 사각굴뚝의 측정점 수 개정</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90 (p84)	<p>아. 자료수집기의 설치 시 기술기준</p> <p>1) 구성시 주의 사항</p> <p>가) 굴뚝자동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와의 통신방식은 인터넷 통신방식을 적용하며, 사업장에서는 관제센터와의 자료 송·수신을 위해 사업장의 기존 인터넷 통신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p> <p>나) 사업장내의 통신망은 인터넷 혹은 시리얼 통신방식 중에 가능한 통신방식을 적용하며, 복수 굴뚝으로 시리얼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간자료수집기가 설치되어 관제센터와의 통신경로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장내 통신망에는 관제센터와의 통신을 위한 전송장비외의 장비를 부착하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는 안된다.</p>	<p>아. 자료수집기의 설치 시 기술기준</p> <p>1) 구성시 주의 사항</p> <p>가) 굴뚝자동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와의 통신방식은 인터넷 통신방식을 적용하며, 사업장에서는 관제센터와의 자료 송·수신을 위해 사업장의 기존 인터넷 통신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회선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자료 송·수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기존 통신회선(사내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사업장 내부 통신망은 이더넷 혹은 시리얼 통신방식 중에 가능한 통신방식을 적용하며, 사업장 여건(거리상 제약 등)에 따라 유·무선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사업장 내부 통신망은 관제센터와의 통신을 위한 전송장비외의 장비를 부착하거나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망의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이나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해 전송장비외의 장비를 설치하거나, 외부 접속이 필요한 경우 관제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인해 사내망 일부 허용</p> <p>○ 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인해 무선망(LTE) 추가</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 data-bbox="320 547 472 579">< 신 설 ></p> <p data-bbox="320 834 472 866">< 신 설 ></p> <p data-bbox="320 1074 472 1106">< 신 설 ></p>	<p data-bbox="1093 284 1664 491">의 고유 정보와 사용자 계정 등을 목록화하여 외부에 유출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이동통신망에 대한 관리적 또는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제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p> <p data-bbox="1037 515 1664 810">바) LTE 이동통신망 구성에 따라 사업장은 암호화, 거리제한, 전파간섭 및 접속 단말기 증가 등 통신장애로 인하여 측정자료 전송 및 관제센터의 원격제어 명령에 지연·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동통신망을 수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p> <p data-bbox="1037 834 1664 1050">사) 2개 이상의 복수 굴뚝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관제센터와 사업장의 자료수집기 간의 자료 송·수신을 1회선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 자료수집기의 상위에 중간자료수집기를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p> <p data-bbox="1037 1074 1664 1329">아) 중간자료수집기는 관제센터와의 통신경로를 단일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복수 굴뚝인 경우 사업장 현장여건(중간자료수집기의 통신포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중간자료수집기를 추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관제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쪽수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122 (p105)	<p>가. 자동측정시스템의 개선계획서 제출</p> <p>< 생략 ></p> <p>< 신설 ></p>	<p>가. 자동측정시스템의 개선계획서 제출</p> <p>< 생략 ></p> <p>3)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개선계획(자체개선 계획)의 개선기간 권고 일수</p> <p>관할 행정기관은 곧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체개선계획 기간을 권고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1016 619 1659 1337">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h>개선(권고)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자료 수집기 및 측정기기</td> <td>측정기기 탈·부착</td> <td>· 자동측정기기 전면교체 60일 이내 · 동일한 자동측정기기 위치 이동 30일 이내 · 수리, 보관 등의 사유로 탈·부착 30일 이내</td> </tr> <tr> <td>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td> <td>· 광원, 디텍터, 센서, 측정셀 교체/수리 · 펌프, 브로워, Signal, 전유압인 교체/수리 · 샘플도관, 프루브/도관 관련 부품 교체/수리 · 전처리설비 교체/수리 · 솔레노이드밸브 교체/수리 · 윈도우(렌즈, 창) 클리닝 · 자료수집기 및 중요 자료수집기 부품 수리 · 유속계 피도우튜브 교체 · 유속계 센서, 열선센서, 온도 등 교체/수리</td> <td>20일 이내</td> </tr> <tr> <td>기타 일반 사항</td> <td>· 드레인 라인, 온도센서, 프로세스 보드, 퍼지라인, 히팅에 관련된 부품 수리 또는 교체</td> <td>10일 이내</td> </tr> <tr> <td>정도검사 관련</td> <td>· 정도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 · 정도검사 수검기간</td> <td>30일 이내</td> </tr> <tr> <td>기타</td> <td>부대설비 작업</td> <td>· 전원설비, 자동전압조정기(AVR) 중의 수리로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td> <td>5일 이내</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개선(권고) 기간	자료 수집기 및 측정기기	측정기기 탈·부착	· 자동측정기기 전면교체 60일 이내 · 동일한 자동측정기기 위치 이동 30일 이내 · 수리, 보관 등의 사유로 탈·부착 30일 이내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 광원, 디텍터, 센서, 측정셀 교체/수리 · 펌프, 브로워, Signal, 전유압인 교체/수리 · 샘플도관, 프루브/도관 관련 부품 교체/수리 · 전처리설비 교체/수리 · 솔레노이드밸브 교체/수리 · 윈도우(렌즈, 창) 클리닝 · 자료수집기 및 중요 자료수집기 부품 수리 · 유속계 피도우튜브 교체 · 유속계 센서, 열선센서, 온도 등 교체/수리	20일 이내	기타 일반 사항	· 드레인 라인, 온도센서, 프로세스 보드, 퍼지라인, 히팅에 관련된 부품 수리 또는 교체	10일 이내	정도검사 관련	· 정도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 · 정도검사 수검기간	30일 이내	기타	부대설비 작업	· 전원설비, 자동전압조정기(AVR) 중의 수리로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5일 이내	<p>○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개선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한 자체개선기간 가이드라인 신설</p>
구분	주요 내용	개선(권고) 기간																				
자료 수집기 및 측정기기	측정기기 탈·부착	· 자동측정기기 전면교체 60일 이내 · 동일한 자동측정기기 위치 이동 30일 이내 · 수리, 보관 등의 사유로 탈·부착 30일 이내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 광원, 디텍터, 센서, 측정셀 교체/수리 · 펌프, 브로워, Signal, 전유압인 교체/수리 · 샘플도관, 프루브/도관 관련 부품 교체/수리 · 전처리설비 교체/수리 · 솔레노이드밸브 교체/수리 · 윈도우(렌즈, 창) 클리닝 · 자료수집기 및 중요 자료수집기 부품 수리 · 유속계 피도우튜브 교체 · 유속계 센서, 열선센서, 온도 등 교체/수리	20일 이내																			
	기타 일반 사항	· 드레인 라인, 온도센서, 프로세스 보드, 퍼지라인, 히팅에 관련된 부품 수리 또는 교체	10일 이내																			
	정도검사 관련	· 정도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 · 정도검사 수검기간	30일 이내																			
기타	부대설비 작업	· 전원설비, 자동전압조정기(AVR) 중의 수리로 전원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5일 이내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장빈도가 높거나 간단한 부품 등은 미리 구비하여 개선기간을 최소화하고, 개선기간 동안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관련 [별표 11] 비고 6에 따른 자가측정 횟수에 맞게 자가측정을 실시한다. 자체개선계획서의 개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최대 30일(자동측정기기의 전면 교체는 최대 60일)이내에 조치하고, 해외 부품 조달 지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연장 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 	
IV. 대기배출부과금 업무처리			
p131 (p119)	<p>가. 기본부과금 산정기준</p> <p>< 생 략 ></p> <p>5) 농도별 부과계수의 결정</p> <p>< 생 략 ></p> <p>< 신 설 ></p>	<p>가. 기본부과금 산정기준</p> <p>< 생 략 ></p> <p>5) 농도별 부과계수의 결정</p> <p>< 생 략 ></p> <p>나) 통합관리사업장의 농도별 부과계수 산정방법은 위의 4), 5) 목과 동일하나, 배출허용기준 대신 최대배출기준을 사용하여 산정한다.</p>	<p>○ 통합관리사업장의 농도별 부과계수 산정방법 내용 추가</p>

쪽수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132 (p120)	<p>나. 측정자료를 이용한 기본부과금 산정방법</p> <p>1) 확정배출량 산정</p> $\text{확정배출량} = (C_1Q_1 \times \text{환산계수}) + (C_2Q_2 \times \text{환산계수}) + \dots + (C_nQ_n \times \text{환산계수})$ <p>여기서, C : 먼지(mg/Sm³), 황산화물의 농도(ppm)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p> <p>Q : 30분 적산유량 (Sm³/30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p> <p>환산계수 : 먼지 (10⁻⁶), 황산화물 (10⁻⁶×64 / 22.4)</p> <p>※ 배출량(C₁Q₁) 계산범위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 사용 후 이하 버림</p> <p>※ 확정배출량 계산범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p> <p>2) 기본부과금 = 확정배출량(kg) ×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부과계수 × 농도별부과계수</p>	<p>나. 측정자료를 이용한 기본부과금 산정방법</p> <p>1) 확정배출량 산정</p> $\text{확정배출량} = \{(C_1Q_1 \times \text{환산계수}) + (C_2Q_2 \times \text{환산계수}) + \dots + (C_nQ_n \times \text{환산계수})\} \times 10^{-3}$ <p>여기서, C : 먼지(mg/Sm³), 황산화물·질소산화물(ppm)의 농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p> <p>Q : 30분 적산유량(Sm³/30분)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p> <p>환산계수 : 먼지 (10⁻³), 황산화물 (10⁻³×64 / 22.4), 질소산화물 (10⁻³×46 / 22.4)</p> <p>※ 30분 배출량(C₁Q₁×환산계수) 계산기준 : 그램(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버림</p> <p>※ 확정배출량 계산기준 : 킬로그램(kg) 단위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p> <p>2) 기본부과금 = 확정배출량(kg) ×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p>	<p>○ 대기법 개정으로 인해 기본부과금 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 추가 및 총량 배출량 산정방법에 맞춰 수치맞춤과 단위 수정</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137 (p124)	<p>가. 사업자, 관제센터 및 행정기관 역할</p> <p>< 생 략 ></p> <p>2) 관제센터</p> <p>가) 자동측정자료를 월별로 확정하며, 확정된 자료를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굴뚝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반기 자료는 반기종료 후 60일까지)</p> <p>나)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협조를 한다.</p> <p>< 신 설 ></p> <p>3) 행정기관</p> <p>가) 관제센터에서 제공받은 월별 확정·초과배출량에 대한 자료에 대한 확인 후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초과 배출량 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행정기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굴뚝전산망에서 월별 확정·초과배출량 및 반기 부과</p>	<p>가. 사업자, 관제센터 및 행정기관 역할</p> <p>< 생 략 ></p> <p>2) 관제센터</p> <p>가) 자동측정자료를 월별로 확정하며, 확정된 자료를 행정기관 및 사업자에게 굴뚝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반기 자료는 반기종료 후 60일까지)</p> <p>나) 기타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협조를 한다.</p> <p>다) 배출부과금 확정 전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부과금 면제사유(사용 연료의 황 함유량에 따른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면제여부 등)를 관할 행정기관에 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p> <p>3) 행정기관</p> <p>가) 관제센터에서 제공받은 월별 확정·초과배출량에 대한 자료에 대한 확인 후 굴뚝 전산망 확정자료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행정기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굴뚝전산망에서 월별 확정·초과배출량 및 반기 부과금</p>	<p>○ 관제센터는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각종 계수들을 관할행정기관에 확인 요청 의무화</p>

쪽수 (기존)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금 산정에 대한 자료를 열람토록 한 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나) 반기별로 초과부과금 및 기본부과금 산정 내역을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배출부과금 납부시 함께 송부하는 <붙임 2> 양식은 관제센터에서 산정한 자료를 토대로 기관별로 직접 작성한다.</p> <p>다) 개선명령(법 제33조) 및 개선계획서의 제출(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등과 관련사항은 관제센터에 통보하여 부과금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 동 사항은 부과금 부과를 위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 등에 필요</p> <p>라) 기타 관제센터 요청에 따른 업무협조를 한다.</p> <p>< 신 설 ></p> <p>마) 부과금의 부과면제는 시행령 제32조의 내용에 따른다.</p>	<p>산정에 대한 자료를 열람토록 한 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p> <p>나)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되 상반기는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하반기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p> <p>< 삭 제 ></p> <p>다) 개선명령(법 제33조) 및 개선계획서의 제출(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등과 관련사항은 관제센터에 통보하여 부과금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 삭 제 ></p> <p>라) 기타 관제센터 요청에 따른 업무협조를 한다.</p> <p>- 지역별부과계수, 배출부과금 면제사유(사용연료의 황 함유량에 따른 황산화물 기본부과금 면제여부 등)를 관제센터가 확인·요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p> <p>마) 부과금의 부과면제는 시행령 제32조의 내용에 따른다.</p>	<p>○ 미사용 중인 양식 삭제</p> <p>○ 관할행정기관은 관제센터에서 확인 요청한 부과금 관련 계수를 검토·확인하고 관제센터에 통보 의무화</p>

쪽수 (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유																																
p138 (p125)	<p>나. 절차</p> <table border="1" data-bbox="259 360 947 898"> <thead> <tr> <th>구 분</th> <th>시 기</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월 배출량 (확정, 초과) 통보 (세부내용은 불임)</td> <td rowspan="2">익월 15일까지</td> <td>행정기관 → 사업자</td> </tr> <tr> <td>산정내역 확인</td> <td>사업자</td> </tr> <tr> <td>↓ 이의가 있을 경우</td> <td></td> <td></td> </tr> <tr> <td>조정 신청</td> <td></td> <td>사업자 → 행정기관</td> </tr> <tr> <td>↓ 이의확인 시</td> <td></td> <td></td> </tr> <tr> <td>확인 및 수정</td> <td></td> <td>행정기관, 관제센터</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수정사실 통보</td> <td></td> <td>행정기관 → 사업자</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부과금 (기본, 초과) 납부 통지</td> <td>반기종료 후 60일까지</td> <td>행정기관 → 사업자</td> </tr> </tbody> </table> <p>- 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 등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하여 실시 -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 의한 부과금 부과절차를 따름.</p>	구 분	시 기	비 고	월 배출량 (확정, 초과) 통보 (세부내용은 불임)	익월 15일까지	행정기관 → 사업자	산정내역 확인	사업자	↓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신청		사업자 → 행정기관	↓ 이의확인 시			확인 및 수정		행정기관, 관제센터	↓			수정사실 통보		행정기관 → 사업자	↓			부과금 (기본, 초과) 납부 통지	반기종료 후 60일까지	행정기관 → 사업자	<p>나. 절차</p> <p>부과금 납부 (납부통지서 발급받은 날부터 30일)</p> <p>(필요시) 부과금 조정신청 (납부통지서 받은 날부터 60일)</p> <p>- 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 등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하여 실시 - 기타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 의한 부과금 부과절차를 따름.</p>	<p>○ 부과금 관련 각종 계수에 대한 관할행정기관 확인 및 통보 의무화</p>
구 분	시 기	비 고																																	
월 배출량 (확정, 초과) 통보 (세부내용은 불임)	익월 15일까지	행정기관 → 사업자																																	
산정내역 확인		사업자																																	
↓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 신청		사업자 → 행정기관																																	
↓ 이의확인 시																																			
확인 및 수정		행정기관, 관제센터																																	
↓																																			
수정사실 통보		행정기관 → 사업자																																	
↓																																			
부과금 (기본, 초과) 납부 통지	반기종료 후 60일까지	행정기관 → 사업자																																	